

◆ D-6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의무가 있는지?

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개별종속노동에 대한 약정임.

근로기준법 제24조(근로조건을 명시) “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,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”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